

특별조사 결과

기관명	지적 및 조치 요구 사항
아시아 문화원	<p>□ ○○팀 직원 비위 특별조사(2020.1월) 조치 관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○○팀 팀장 A가 특별조사 기간(2020.1.13.~29) 중 사직서를 제출(20.1.23)하였음에도, 자체 조사 중인 사건은 의원면직 제한 사유가 안된다는 인사규정 제48조¹⁾를 근거로 조사완료('20.2.13) 전 의원면직 처리('20.2.7) ☞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직원의 의원면직을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의원면직 제한 관련 「인사규정」 제48조를 기재부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」에 맞게 개정(통보)

1) 제48조(의원면직) ② 검찰,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와 제35조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.